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가합23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수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규수

변론 종결 2020. 6. 18.

판결 선고 2020. 7. 1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의 모친인 C은 2015. 4.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5. 3.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8.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D(4/10 지분), E(6/10 지분)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와 C이 주민등록상 동거를 하는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하였고, 대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면서 5년 후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는 2018. 2. 10. 이 사건 부동산을 D, E에게 매매대금877,500,000원에 매도한 후 이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나)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약정)에 따른 권리를 가지고 있고, C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877,5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877,500,000원 중 일부인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등).

나) 원고는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와 C 사이의 증여계약에 기초한 권리를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대로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C은 이를 해제할수 있고(민법 제555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과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은 있으나,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의사를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긴내용증명우편이 2020. 5. 21.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C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에 기초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자대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5년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러한 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D, E에게 매매대금 877,500,000원에 매도한 후 이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매매대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877,500,000원 중일부인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로는 C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이미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적법하게 해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하더라도 이는 결국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 그 이행방식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약정의 기초가 되는 C과 원고 사이의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예비적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도균, 판사 진민희, 판사 장민주

별지**목 록**

1. 서울 마포구 F 대 129㎡
2. 위 지상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건물 66.55㎡, 부속건물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광 3.31㎡. 끝.